

| 국제 산업보건 동향

〈호주 Safe Work 12월 발표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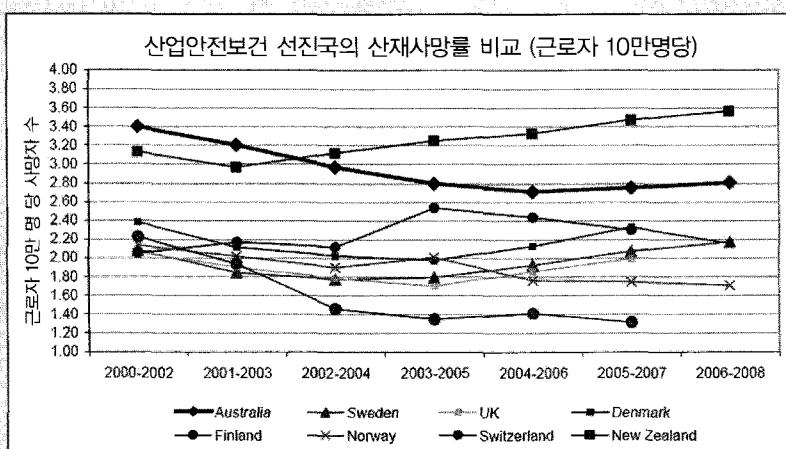


호주 Safe Work, 호주 근로자의 안전보건 및 산재보상 현황 보고서 발표

호주 Safe Work는 호주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산재 및 질병 경감 노력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산재보상기관 및 산업안전보건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동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본 보고서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향상, 산재보상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 및 의사결정의 바탕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되었다. 보고서를 통해 호주내 국가 산업안전보건 전략의 그간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의 향상 및 산재보상에 기여한 요인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호주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상의 동향 파악, 외국의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을 수록하였다. 본 보고서는 호주 Safe Work의 주도 하에 호주 및 뉴질랜드의 산업안전보건기관 및 산재보상기관의 협조로 제작되었다.
- 2002~2012년 호주 산업안전보건 국가전략 목표달성을 중간진행 상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12년까지의 목표	2008-2009년 달성실적
제해 발생률 및 근골격계 질환 보상청구 사례 40% 감소	22% 감소 달성: 목표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업무중 사망자 수(산재보상자에 해당) 20% 감소	25% 감소하여 목표를 초과달성함
2009년까지 세계 최저수준의 외상성 사망률 달성	2006~2008년까지 호주의 산재사망률은 세계에서 7번째로 낮은 수준임



■ 산업안전보건 성과

- 업무상 질병 및 사고 청구건수가 14% 감소하였다.
'04~'05 (근로자 1000명당 16건) → '07~'08(근로자 1000명당 13.8건)
- '08~'09년 기간 동안 총 223건의 사망산재가 발생하여 산재보상을 받았는데, 그 중 172명은 상해 및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산재, 51명은 기타 질병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 재해다발 업종은 다음과 같다.
 - 농업 · 임업 · 어업: 근로자 1000명당 25.2건의 산재보상 청구
 - 운수 · 창고업: 25건
 - 제조업: 23.4건
 - 건설업: 21.8건
- 2008~2009년의 기간 동안 호주 전역의 11만 4천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했으며 총 5만 6천여 건의 주의조치를 내린바 있다.

〈출처〉 <http://safeworkaustralia.gov.au/AboutSafeWorkAustralia/WhatWeDo/Publications/Pages/CPM12.aspx>

| 국제 산업보건 동향

〈영국 Cardinus Risk Management 8월 발표 자료〉



Cardinus Risk Management, 업무관련 근골격계질환의 사회·경 제적 위험 강조

업무상 상해예방 및 위험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영국의 Cardinus Risk Management 社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상지장애를 비롯한 업무상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동안의 주요 판례 소개, 상지장애로 인한 기업과 사회의 비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 상지장애는 근골격계 질환의 한 종류로 손목관절증후군, 건초염, 건염, 상과염, 전등에 의한 백남병, 활액낭염, 요통 등을 포함한다. 영국의 상지장애에 대한 법 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성문법: 1974년 제정된 영국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이고 실천가능한 수준의 안전, 보건 및 복지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
- 민법: 영국 민법에 따라 사업주의 관리소홀 및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업무중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해 사업주가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음)

■ 상지장애 주요 판례

- *Ping v Esselte-Letraset*(1992년)

: 영국 Kent 지역의 인쇄소에 근무하던 9명의 근로자에서 건초염, 상과염 등의 상지장애가 발생하였다. 반복적 움직임을 요하는 이들 근로자의 업무성격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결을 내렸다.

- 판결의 요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팔목이나 팔 등에 통증이 생길 경우 이와 같은 증상을 즉각적으로 사업주에 보고할 수 있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가 호소하는 통증의 원인을 밝혀낼 의무가 있다. 이런 절차의 부재로 인해 사업주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 *Mitchell v Atco* (1995년)

: 상당한 무게의 모터를 들어 올리거나 뒤집는 작업을 하던 원고는 상지장애 판정을 받은 뒤 산재보상 청구를 하였다. 회사 내 교대근무에 대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기간 과중업무에 시달렸다고 호소함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원고측 의사의 소견이 회사측의

사 소견보다 우선시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 42,600 파운드의 보상판결을 내렸다.

- 영국사회보장체제하의 산재보상제도에 따르면 무과실 보상(no-fault compensation)도 가능하다. 지금까지의 상지장애 산재판결사례를 보면 특정 업무상의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아야만 산재로서 보상받을 수 있었다.

■ 근골격계 질환이 기업에 미치는 비용

- 2009년 EU에서 발표한 "Fit for Work"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은 2400억 유로에 달한다고 한다. 병가 원인의 49%는 근골격계 질환이며, 영구적 신체능력 상실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원인의 60%가 근골격계 질환으로 나타났다. 근골격계 질환의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고려해 볼 때, 선진사례를 활용한 개입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위험성 평가방식과 업무복귀 프로그램의 실행이 필수적인 것으로 지적되었다. ●

* Cardinus Risk Management 社: 영국의 디스플레이 장비 규제 및 평가, 화재 안전 및 위험 평가기관. 온라인을 통한 업무상 상해예방 및 위험관리 솔루션 제공

〈출처〉 <http://www.ergojournal.co.uk/category/whitepapers/>

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팀